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521
-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 외 16명
- 발 의 일 : 2024년 1월 26일
- 회 부 일 : 2024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한 용어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나. 입법예고(2024.2.14. ~ 2.18.) 결과: 의견없음.
-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이하 '본 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2조¹⁾)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지원, 지원 신청 및 정산 등, 지도·감독, 예우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바르게살기운동사업”에 대하여 정의함.
제3조(지원)	-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 보조금 지원 신청절차, 중복지원 금지, 보조금 관리·정산 관련 사항을 규정함.
제5조(지도·감독)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제6조(예우)	- 시장은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음.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는 1989년 4월 1일에 설립되어, 산하 25개구 협의회, 376개동 위원회가 있으며 현재 58,000명의 회원이 활동중에 있음.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법정단체 현황('24.2.1.기준)]

구 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지원근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 市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설립일자 (서울시조직)	1981. 10. 1.	1989.4.1	1989.4.1	1980. 10. 27
조직구성	25개자치구 지회, 426개동회	25개자치구 협의회, 376개동 위원회	25개자치구 지회, 425개동 위원회	25개자치구 협의회
대 표 자 (임기)	김연포('56.2.11.) ('24.2.1.~'27.1.31)	공석 대행 : 박태순('46.4.17.) ('23.6.9~'24.정기총회 시까지)	김성덕('57.6.18.) ('22.11.11.~'25.11.10.)	윤동한('47.12.30.) ('23.9.1.~'25.8.31.)
회 원 수	45,842명 (전국 210만여명)	58,000명 (전국 80만여명)	221,255명 (전국 320만여명)	3,645명 (국내외 21,984명)
직 원 수	6명	2명	3명	1명
소 재 지	동대문 천호대로 389, 6층	양천 신목로 10	동작 여의대방로20길 23-1, 자유회관1층	중구 장충단로 84, 201호
'24년 추진사업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서울 - 약자와의 건강한 동행 - 쪽방촌 이야기 - 탄소중립 실천 사업 - 새마을지도자대회 - 새마을여인대회 - 국민독서경진대회	밝고 바른 사회건설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 안전문화 정착교육 - 여성대학 - 사랑의 꾸러미사업 - 민주시민개혁 대회 - 의식개혁 글짓기대회 - 통일안보체험 행사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 실천운동 - 안보지킴이 워크숍 - 안보지킴이 다짐대회 - 안전의식제고 활동 - 통일관 정립 강연회 - 호국영령 추모 위령제 - 통일안보체험 행사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 - DMZ 사계를 만나다 - 탈북청년과 함께하는 북한인권세미나

- 본 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이하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광역시·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 현황: 8개 시도 >

연번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자
1	경기도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4. 29.
2	경상남도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2014. 1. 9.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 7. 11.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2. 20.
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5. 20.
6	전라남도	전라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2010. 4. 13.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2016. 5. 13.
8	충청북도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5. 12.

- 다만, 조례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²⁾ 등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추후 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한 단체 등에 대해서도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야 하는지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단 체 명	'21년(교부액)	'22년(교부액)	'23년(교부액)	'24년(예산액)
계	321,501	1,987,279	631,053	437,753
새마을회	101,738	1,488,889	170,231	121,661
바르게살기운동	67,236	360,486	141,431	126,561
한국자유총연맹	84,027	73,384	124,321	124,336
민주평통	68,500	64,520	195,070	65,195

나. 세부내용 검토

1) 목 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밝힘으로써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³⁾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를 조례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만, 하부조직의 경우 자치구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협의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는 없는지, 자치구와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지원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자체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령에 없는 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의를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3호는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을 포괄적(공익목적 사업)으로 정의하여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사업을 특정할 수 없고, 다른 국민운동사업과 유사성과 차별성을 인식할 수 없는 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지원(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운영 및 행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비 뿐만 아니라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안 제4조제1항에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3조에서 모두 사업비(바르게살기운동사업, 행사·활동·교육 등의 경비)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을 중복하여 나열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4) 지원 신청 및 정산 등(안 제4조)

○ 안 제4조는 보조금 신청서류, 중복지원 불가, 지원 및 정산 근거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5) 지도·감독(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이 필요시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다만, 지방보조금 관련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29조(검사)에서 지방보조금의 지도·감독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과 동일한 목적과 취지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얻는 실익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

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6) 예우(안 제6조)

- 안 제6조는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 등의 격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표창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안 제6조(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 조의 주요 내용은 표창인 바, 조의 내용을 명확히 조 제목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 제목을 “포상” 또는 “표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행정국은 법정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나, 표창 관련 조항 등은 기존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준하여 법정단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제2호의 내용은 타 국민운동단체와 차별된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바,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6조 본문과 안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의 취지를 본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이 태 기
------	-------	-------	-------